

학교 급식 프로그램 안내문

학부모님/보호자님께,

우리 자녀들이 학업에 충실하려면 건강한 식생활이 필수적입니다. **SYOSSET CENTRAL 학군**에서는 학교마다 매일 건강한 급식을 제공합니다. 아침 식사는 **\$1.00**, 점심 식사는 **\$2.90** 입니다. 귀 자녀의 경우 무료·할인 급식을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자녀 각각에 대해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무료·할인 급식을 신청하려면 본 급식청 관할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를 합쳐서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를 1부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작성이 미완료된 신청서는 승인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서상 필수 기재사항을 빠짐 없이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 완료한 신청서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P.O. BOX 9029, SYOSSET, NY 11791.**

2. **무료 급식은 누가 이용할 수 있습니까?**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NAP)이나 인디언 보호지역 식품분배 프로그램(FDPIR) 또는 저소득 가구를 위한 임시보조금(TANF)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가구의 아동은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원 중에 지원 프로그램 수급자가 있어 본 신청서상 케이스 번호를 기입했다면,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는 범주형 자격이 가구 내 모든 아동에게 적용됩니다.
- 위탁보육기관이나 법원의 법적 책임하에 있는 위탁아동도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재학 중인 학교에서 제공하는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아동도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 노숙, 가출, 이주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자격이 있습니다. 노숙, 가출, 이주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을 둔 가족은 급식청(SFA)에 수혜 관련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 총소득이 연방소득자격지침상 무료·할인 한도 이내인 경우, 귀 자녀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가구 총소득이 아래 표에 나와 있는 한도 이내인 경우, 귀 자녀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2024 년도 할인 급식용 소득자격지침					
합계 가구 인원	연간	월간	1 개월에 두 번	2 주일에 한 번	1 주일에 한 번
1	\$ 26,973	\$ 2,248	\$ 1,124	\$ 1,038	\$ 519
2	\$ 36,482	\$ 3,041	\$ 1,521	\$ 1,404	\$ 702
3	\$ 45,991	\$ 3,833	\$ 1,917	\$ 1,769	\$ 885
4	\$ 55,500	\$ 4,625	\$ 2,313	\$ 2,135	\$ 1,068
5	\$ 65,009	\$ 5,418	\$ 2,709	\$ 2,501	\$ 1,251
6	\$ 74,518	\$ 6,210	\$ 3,105	\$ 2,867	\$ 1,434
7	\$ 84,027	\$ 7,003	\$ 3,502	\$ 3,232	\$ 1,616
8	\$ 93,536	\$ 7,795	\$ 3,898	\$ 3,598	\$ 1,799
*추가 1 인당 추가액	\$ 9,509	\$ 793	\$ 397	\$ 366	\$ 183

3. **위탁보육을 받는 학생도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위탁보육기관이나 법원의 법적 책임하에 있는 위탁아동도 무료 급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가구 내 모든 위탁아동에게는 소득에 관계없이 무료 급식이 제공됩니다. 또한, 위탁가정 내 실제 자녀의 급식 수급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위탁아동도 해당 가구원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위탁아동을 해당 가구원에 포함시키면 가구 내 실제 자녀의 급식 수급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탁가정 내 실제 자녀가 무료·할인 급식 수급 자격이 없더라도, 자격이 있는 위탁아동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 **자녀가 노숙, 가출 또는 이주 상태인 경우에도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노숙, 가출, 이주의 정의에 부합하는 아동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에게 무료 급식이 제공된다고 통보받지 못하셨다면 **인사담당 부교육감(ASSISTANT SUPERINTENDENT FOR HUMAN RESOURCES)인 에게 전화 516-364-5647** 로 자격여부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이번 학년도에 제 자녀가 무료 급식을 이용할 수 있다고 승인하는 내용의 서신을 받은 경우라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받으신 서신을 자세히 읽어 보시고 서신상 지침을 따르십시오. 궁금한 점은 학교에 전화 **516-364-5651**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자녀의 신청서를 작년에 승인받았는데, 이번에도 새로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신청서는 해당 학년 전체와 이번 학년 첫 30 등교일(및 새로 정해지는 자격 기준일 중 먼저 도래하는 일자)까지만 유효합니다. 이번 새 학년도도 수급 자격이 있다고 학교로부터 통보받지 않은 이상 신청서를 새로 작성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승인을 받은 새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무료 급식 이용자격을 통지받지 못하신 경우에는 유료 급식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7. **제가 여성·영아·아동(WIC) 프로그램 이용자인데 제 자녀가 무료 급식을 받을 수 있습니까?** WIC 에 참여하는 가구의 자녀도 무료 또는 할인 급식을 이용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8. **제가 신청서상 제공하는 정보가 확인을 거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정보에 대한 증빙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9. **현재는 이용 자격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신청할 수 있나요?** 예, 학년 도중에 언제라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나 보호자가 학년도 기간 중에 실직 또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가구 소득이 소정 한도 이하로 내려가면 무료·할인 급식을 이용할 자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0. **제 신청서에 대해 학교가 내린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런 경우에는 학교 관계자와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다음 연락처로 전화하시거나 편지를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DR. THERESA CURRY, OFFICE OF THE DEPUTY SUPERINTENDENT, P.O. BOX 9029, SYOSSET, NY 11791 또는 516-364-5600.**
11. **제 가구원 중 미국 시민이 아닌 사람이 있더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료·할인 급식을 이용할 자격요건은 귀하나 자녀 또는 가구원의 시민권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12. **가구원으로 누구를 포함시켜야 하나요?** 한 집에 살면서 수입과 비용을 공유하는 사람들(조부모, 친척, 친구 등)은 모두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귀하 본인, 그리고 집에서 귀하와 함께 거주하는 모든 자녀도 다 포함시키셔야 합니다. 단, 경제적으로 독립한 사람(예: 귀하의 피부양자가 아님, 수입을 귀하나 귀 자녀와 공유하지 않음, 비용을 비례 부담함)은 한 집에 살더라도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13. **제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평상 시 소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평소 수입은 매달 1,000 달러인데 지난달에 일이 조금 줄어 수입이 900 달러였더라도 평상 시 소득액인 1,000 달러라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오버타임 근무를 평상 시에도 자주 해서 오버타임 수당을 받는다면 포함시키지만, 가끔씩만 한다면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실직을 당했거나 근무 시간 또는 수입이 줄었다면, 현 수입을 기입하십시오.
14. **군인 가족이라면 수입 보고 방식이 다른가요?** 기본급여 및 현금 보너스는 수입으로 간주해 보고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부대 외 지역 파견에 따른 주택 및 식품, 의류 비용 보전용 현금 수당도 수입에 포함됩니다. 단, 군인주택민영화구상(Military Housing Privatization Initiative)에 속한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당을 수입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파병에 따른 추가적인 전투수당도 수입에 포함시켜서는 안 됩니다.

15. 가정 형편상 보조가 더 필요한데, 신청할 만한 다른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SNAP 또는 기타 보조를 신청하는 방법은 지역 사무국이나 1-800-342-3009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자녀가 무료·할인 급식을 이용하려면,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를 작성 지침에 따라 가구당 1 부를 올바르게 작성해서 **본 신청서에 나와 있는 지정 사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가구원과 자녀를 포함해서 신청서 1 부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 SNAP 이나 TANF 프로그램을 수급받고 있거나 FDIPIR 에 참여 중이라면, 아동 이름은 물론 해당 가구의 SNAP, TANF, FDIPIR 케이스 번호, 그리고 성인 가구원의 서명까지 신청서에 기재하셔야 합니다.
 - SNAP 또는 TANF 케이스 번호를 모를 경우 지역 사회복지부에 문의하십시오.
 - 보조 프로그램 참여를 이유로 급식청으로부터 자녀를 직접 인증받으신 경우에는 본 신청서를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같은 직접 인증이 이뤄졌는지 불확실하다면 학교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가구원의 SNAP, TANF, FDIPIR 케이스 번호를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서상에 가구원 모두의 이름, 각 가구원의 수입액과 수급 주기, 수입원을 모두 기재하셔야만 합니다. 신청서에는 성인 가구원의 서명과 해당인의 소셜시큐리티 번호 마지막 네 자리도 기재하셔야 합니다.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SS#가 없음” 칸에 표시하셔야 합니다.
- **본 신청서 및 작성 지침에 명시된 대로 자격 정보를 완전히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를 승인받으실 수 없습니다.** 신청서의 승인 또는 거부 여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변경사항 보고: 신청 당시 승인받은 수급은 해당 학년 전체와 다음 학년 첫 30 일(학교 운영일 기준)까지, 아니면 새로운 자격 판정이 이뤄지기까지, 이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유효합니다. 수입이 늘었거나, 가구원 수가 줄었거나, SNAP 수급을 중단했다더라도 이같은 변경을 이제는 보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장애아동을 위한 급식 서비스: 연방 규정에 따르면, 학교와 기관에서 식단에 제약이 따르는 장애아동에게도 추가 비용 없이 급식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연방 규정 7CFR Part 15b.3 에서 정의하는 장애 학생이란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학생으로서 자신의 주요 일상활동 중 한 가지 이상이 실질적으로 제약을 받고 그러한 장애의 기록이 존재하거나 장애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학생을 뜻합니다. 주요 일상활동에는 자기 돌보기, 수작업하기, 보기, 듣기, 먹기, 잠자기, 걷기, 서 있기, 들기, 구부리기, 말하기, 숨쉬기, 학습하기, 읽기, 집중하기, 생각하기, 의사소통하기, 일하기가 포함되며 이에 국한하지 않습니다. 우선 학교에 급식 수정을 요청하고 주 면허를 소지한 의료전문가의 의료진술서를 학교에서 제출하셔야 합니다. **장애로 인해 자녀에게 대체식이 필요하다고 여기시면 의료진술서상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을 포함해 자세한 사항을 안내해 드리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보장: 미국 농무부(USDA)에서는 타이틀 I 및 전국교육성취도평가(NAEP)와 같은 연방 교육 프로그램(학교 자금배정 등을 결정하고, 등교지역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평가하고, 교육성취도를 평가하고자 미국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집행에 직접 관련된 자에게는 학부모/보호자의 동의 없이도 학생 이름과 자격 상태를 공개할 수 있다고 승인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주 또는 지방 교육 프로그램은 물론 전국 급식 프로그램과 유사한 연방·주·지방 영양 프로그램의 운영 주체가 주 또는 지방 교육부처라면, 해당 프로그램 측에도 상기 정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국학교점심 프로그램 및 학교아침 프로그램, 우유 특별프로그램, 아동 및 성인 돌봄 음식 프로그램, 여름 급식 서비스 프로그램 및 여성·영아·아동 특별 보충영양 프로그램(WIC)을 포함한 전국학교급식법(NSLA)이나 아동영양법(CNA)하에서 허가받은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집행에 직접 관련된 자, 회계감사를 목적으로 한 연방 회계감사원장, 프로그램과 관련한 NSLA 또는 CNA 위반 혐의를 수사하는 연방·주·지방 사법당국 관계자에게도 무료·할인 급식 신청서에 수록된 정보 일체를 공개할 수 있습니다. **NSLA 에서 명시적으로 허가하지 않은 자격 정보를 공개하려면 학부모/보호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아동 급식 프로그램의 운영상 어떠한 아동도 인종, 성별, 피부색, 출신국, 나이, 장애, 영어 구사력 부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번호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SYOSSET CENTRAL SCHOOL DISTRICT, BUSINESS OFFICE
516-364-5651

감사합니다.

차별 금지 선언: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다고 여겨질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설명해드립니다.

연방 민권법 및 미국 농무부(USDA) 민권 규정 및 정책에 따라 본 기관은 인종, 피부색, 출신국, 성별(성 정체성 및 성적 취향 포함), 장애, 연령 또는 과거의 민권 활동에 대한 응징이나 보복에 기초하여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정보는 영어 외 언어로도 제공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얻기 위해 대체 커뮤니케이션 수단(예: 점자, 큰 활자본, 오디오테이프, 미국 수어 등)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인 경우, 프로그램 주무부처에 직접 문의하시거나, 미국 농무부 산하 TARGET 센터 전화 (202) 720-2600(음성 또는 TTY)로 문의하시거나, 연방중계서비스 전화 (800) 877-8339 를 통해 농무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이용상의 차별에 관한 민원 제기는 미국 농무부 프로그램 차별 민원제기용 온라인 양식 AD3027(<https://www.usda.gov/sites/default/files/documents/ad-3027.pdf>), 농무부 지역별 사무소, 전화 (866) 632-9992, 농무부 수신 우편 중에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민원제기서에는 민원인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차별로 추정되는 해당 행위의 성격과 발생일을 기록해서 민권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ASCR))에게 상세히 알려야 합니다. 작성을 마친 AD-3027 양식 또는 민원제기서는 다음 방법으로 미국 농무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1. **우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Office of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ivil Rights
140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50-9410 또는
2. **팩스:**
(833) 256-1665 또는 (202) 690-7442, 또는
3. **이메일:**
program.intake@usda.gov

이 기관은 균등 기회 제공기관입니다.